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 정정 알림

---

1. 식품표시광고정책과-4424호('22.3.31)와 관련됩니다.
2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식약처 고시 제2022-25호, 2022.3.31) 중 " 1.3.라. 소비기한 정의"에 정정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각 시·도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에 고시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, 각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부서 등에 이 고시내용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) 및 식품안전나라(<http://foodsafetykorea.go.kr>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 > 식품표시정보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 1부  
2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전문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, 지방청, 관계 부처, 시·도 관련 부서, 관련 협회·단체, 보건복지위원회 등

주무관 **손진혁** 연구관 **병가** 식품표시광고정 책과장 **박동희** 전결 2022. 4. 1.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4487 (2022. 4. 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생명과학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  
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

전화번호 043-719-2189 팩스번호 043-719-2180 / [sontoly33@korea.kr](mailto:sontoly33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